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

제출연월일 : 2025. 1.

제 출 자 : 정 부

재의요구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지에 기재된 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

2024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증액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 국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매년 교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해

당 재원은 2024년 기준으로 전체 교육청 예산의 약 7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9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가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의 안정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일부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2025년부터 국가의 비용 지원이 일몰되더라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계속 실시됩니다.

- 그러나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예산요구서에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향후 3년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의 정책적 고려 없이 재정지원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2025년 예산안은 국가의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의 비용에 대해 별도의 증액편성 없이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되었습니다.

- 그런데 목적예비비가 전년대비 6천억원 감액된 1조6천억원인 상황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만 9천억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다른 항목의 지급이 어려워지고, 그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신속한 지원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일몰 기한이 도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2. 개정안은 헌법이 정부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있습니다.

- 헌법은 국가 재정에 관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도록, 국회에는 예산심의·확정권을, 정부에는 예산편성·제출권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헌법이 정부에 예산편성·제출권 및 예산 증액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의 배분 권한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국회가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야기되는 부작용을 막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나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상황이나 교육재정의 운영 방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의 충분한 고려 없이 국가에게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이는 헌법에 의해 정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사전적으로 제약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추가로 증액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는 교육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을 매년 교부하고 있습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7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이미 교직원 인건비, 지역 간 균형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복지 지원비 및 고등학교 등 학교의 운영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더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세입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은 2019년 기준 87조4천억원에서 2024년 기준 103조9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보다 3조4천억원 증가하여 총 72조3천억원일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고등학

교 등의 무상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로 전체 교육청이 2025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산을 이미 편성하여 2025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4.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처리되었습니다.

-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이는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안에 대한 논의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또한 현재의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와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계속 실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상교육 시행 여부에 대한 일부의 문제 제기로 인해, 정작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결론

- 이와 같이 개정안은 (1) 국가가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비용에 대하여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강제하고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2) 헌법에 의해 정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있으며, (3) 국가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4)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관하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별첨]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